

# 보건진료원의 업무분석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간호학회지 창간호, pp. 144~171, 1989. 1.

## 김 성 혁 외 18명

본 연구는 보건진료원을 통한 일차건강 관리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보건진료원 제도의 계속적인 발전과 직무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사회 간호학회 주관하에 실시되었다.

보건진료원 전수를 대상으로 1986년 8월1일부터 1월25일까지 조사하였고 자료처리에 유용한 1,438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보건진료원 1명당 보건의료를 제공받고 있는 주민수는 평균 1,675명으로서, 전국의 보건진료원에 의한 보건의료 제공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주민은 약 335만명으로 추정된다. 즉 우리나라 총 인구의 약 8%이며 농촌인구의 약 28%가 보건진료원들에 의해 보건의료를 제공받고 있다.

2. 보건진료원들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1인당 적정 담당 주민수는 평균 1,360명으로 실제 담당주민수보다 315명이 적은 인원이었다.

3.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사회에 보건의료자원은 약국(방)이 48.2%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주민의 이용도가 자장 높은 보건의료 기관은 보건진료소(56.5%)로 나타났다.

4. 보건진료원이 환자치료 중 가장 많이 의뢰하고 있는 보건의료 기관은 병·의원(73.4%)이며, 보건소(17.3%), 보건지소(5.6%) 순서로 나타났다.

5. 보건진료원이 인근 보건의료기관 중 업무협조가 가장 잘 되고 있는 기관은 보건소이며, 보건지소, 민간 보건 의료기관 순서로 나타났다.

6. 보건진료원을 전문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전문 간호감독 요원 제도의 설치에 대해 78.8%의 보건진료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7. 보건진료원의 7개 직무영역의 업무수행은 “통상질환관리”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일요일을 제외하고 “통상질환관리”에 약 3시간 30분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우리나라 농촌 인구의 72%가 아직도 보건진료원에 의한 일차건강관리 사업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일부는 소도시 및 읍지역에 접하여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주로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 치료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요구도가 증가되어 가는 현실

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확대 일로에 있는 이 시점에서 보건진료원에 의한 일차건강관리 사업의 확대에 예방적 보건의료 사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의 확대는 특정 보건의료기관(2차, 3차) 특히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의료보험의 재정적인 측면에도 크게 기여함은 물론 증가되어 가고 있는 건강요구도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보건진료원에 의한 일차건강관리 사업을 놓여놓은 것만 아니라 중·소도시 및 대도시에서도 확대 시행함으로써 “서기 2000년까지 전인류에게 건강을”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슬로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 환자권리 인식에 관한 연구

### — 경상남도 일부 보건진료소를 방문한 성인환자 중심으로 —

진주간호전문대 논문집 제12권 제1호, pp. 81~100. 1989

#### 백 명 화

본 연구는 환자의 권리에 대한 환자 자신들의 인식정도를 조사하고 환자권리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고자 1988년 12월1일부터 12월30까지 경상남도에 위치한 10개 지역 보건진료소를 방문한 성인환자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149명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환자 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는 평균 4.322로 비교적 높았으며 높게 반응한 문항을 순위별로 보면 의료인으로부터 신중하고 정중한 대우를 받을 권리(M=4.785), 예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의료인으로부터 받을 권리(M=4.604), 사전에 검사와 치료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응급상태는 제외)(M=4.517), 타당한 치료와 간호가 계속될 것을 기대할 권리(M=4.446), 퇴원 후에도 건강관리를 계속 받을 권리(M=4.345)의 순이었다.

낮게 반응한 문항을 순위별로 보면 자신의 간호와 치료에 관계되는 다른 기관(보건사회부, 보험공단, 행정당국)에 대해 알 권리(M=3/892), 진료소(병원 규칙과 규정에 대해 알 권리(M=4.061), 만약 입원 상태라면 입원기간동안이나 의료인과 만날 시간과 장소를 미리 알 권리(M=4.156)의 순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환자 권리에 대한 문항과의 상관관계에서는 27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